

제302회 임시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광수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광 수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나,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습니다.

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2023.7.21. 시행)에 따르면,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등 설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.

이에 구청장이 비상벨,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,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서울시의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유지·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